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7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전략물자관리원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목차

1. 일본 수출통제 제도 개요	3
2. 일본 수출통제 강화조치 (7.1일 발표)	5
3-1. (전략물자 수입시) 포괄허가/개별허가	6
3-2. (비전략물자 수입시) 캐치올 허가 (Catch-all)	9
4. 기업 지원방안	11
5. FAQ	12
[별첨 1]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도입경과	16
[별첨 2] 한-일 전략물자 제도 비교	17
[별첨 3] 일본의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 주장 관련 팩트 체크	21



○(제도취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 등을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

- * 전략물자: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
- *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수출통제 제도 운영(한국 제도 개요는 별첨1, 2)

○(통제 품목)

-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 반영,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 지정
-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통제대상에 해당

구분		품목수	세부설명
전략물자	민감품목	26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품목 ..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품목	85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 (예)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제25 ~ 40류, 제54 ~ 59류, 제63류, 제68 ~ 93류, 제95류 ..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

※ 일본 통제품목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 (japan.kosti.or.kr) 확인 가능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 02-6000-6400 문의 가능

1 / 일본 수출통제제도 개요

○ (수출지역) | 화이트국가: 한국 포함 27개국 | 일반 국가: 화이트 국가가 아닌 잔여국

- * 화이트 국가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출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 적용
- *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3개 조약(NPT, CWC, BWC) 가입, 캐치올 통제 도입 여부를 요건으로 화이트국가 선정
- * <https://www.meti.go.jp/policy/anpo/apply08.html>에서 확인 가능

○ (허가종류) 품목별 민감도 및 수출지역을 고려, 개별허가·포괄허가·캐치올 허가 등으로 차등 적용

- * 포괄허가는 개별허가 대비 간소화된 심사 적용, 기업들에 유리 (세부내용 후술)
- * 캐치올 허가는 개별허가와 유사, 다만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 (일본에서는 캐치올 허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개별허가로 통칭)

분류		대상국가	허가방식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 (263개)	모든 국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857개)	화이트 국가	일반포괄허가
		일반 국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
비전략물자 (중점감시대상 품목, 우려거래자 거래 품목 등)		화이트 국가	(허가 불필요)
		일반 국가	캐치올 허가

2 / 일본 수출통제 강화조치 (7.1일 발표)

①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 (진행상황) 7.4일부터 既 시행 중 (기존 포괄허가 효력 정지, 특별일반포괄허가도 금지)

②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 (진행상황)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시행시기 미정

* 의견 수렴(~7.24일) → 각의 결정 → 공포 → 시행(공포 21일후~)

*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7.24)

..... (주요효과)

수입품목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전략물자	민감품목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일반 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만 가능)
비전략물자		허가 불필요	캐치올 허가

3¹ (전략물자 수입시) 포괄허가/개별허가

구분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3품목 外)	개별허가(3품목)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통상 6개월
사용자격	모든 기업	ICP기업만 가능*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신청방법	전자신청	전자신청	전자/우편/방문 신청	전자/우편/방문 신청
제출처	경제산업국 및 지역 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 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 사무소	경제산업성 본성
처리기간	통상 1주	통상 1주	통상 90일	통상 90일
신청서류	2종 ①허가 신청서 ②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2종 ①허가 신청서 ②체크 리스트 (CP 이행현황 자가점검표) [필요시] 특정수출자승인서 (CP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함)	3종 ①허가 신청서 ②신청 이유서 또는 신청 내용 명세서 ③계약서등	7종 ①허가 신청서 ②허가신청 명세서 ③계약서 등 ④통제목록과 사양 대비표 ⑤카탈로그/사양서 등 ⑥ <u>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u> ⑦ <u>수요자 서약서**</u> [필요시]*** 수권 증명서, 위임장, 원본 인증서, 가격 등 분석 설명서, 기타 지시가 있는 증거 서류 등

* 특별일반포괄허가는 ICP기업만 활용가능

** 밑줄은 수입자 준비 서류

*** 각 품목별 추가 제출서류 확인 (<https://www.meti.go.jp/policy/anpo/apply09.html>)

3개 품목의 추가 제출서류 확인 (<https://www.meti.go.jp/policy/anpo/kanri/sinsa-unyo/sinnseisyo-tenpsyorui-itiran/tenp24fy/tenpD1.html>)

○ (의미)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 일본 기업 중 CP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회사 개요,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조직 현황, 자율준수 이행상태 현황표를 첨부하여 신청 → 일본 경산성이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

○ (중요성) 화이트국가 배제시, ICP기업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

○ (현황) 일본의 전체 ICP기업은 약 1300여개,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기업은 총 632개사

* https://www.meti.go.jp/policy/anpo/compliance_programs_pdf/kigyokouhyou.pdf

.... 공개된 ICP기업에 대해 기업별 사명, 주소, 홈페이지, 생산품목을 엑셀로 정리,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japan.kosti.or.kr)

....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 02-6000-6400로도 문의 가능

[참고 2] 수입자 준비서류

○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1) 최종수요자 확정시

등기부 등 공식문서, 대외 기업소개자료,
기타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예: 임대차 계약서)

(2) 최종수요자 未 확정시

등기부 등 공식문서, 대외 기업소개자료,
해당 화물의 보관방법, 보관장소에 대한
설명자료

* https://www.meti.go.jp/policy/anpo/kanri/shinseisho/tenpu24fy/seiyakusho_yoshiki_kisaiyouryou.html

**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에서도 확인 가능

○ 수입자 서약서 *

FORM 2.

(This Form is designed by METI and shall be completed by the end-us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

.. (Name of the exporter in Japan) ..

END-USE CERTIFICATE (EUC) ..

for presentation to the Export Control Authority of Japan (METI) ..

..

SECTION1: PARTIES CONCERNED ..

(a) Name of Exporter ..

(b) Name of Buyer ..

(c) Buyer's Address ..

(d) Name of Consignee ..

(e) Consignee's Address ..

(f) Name of End-User ..

(g) End-User's Address ..

(h) Specific Location where the items will be used (if different from (g)) ..

..

SECTION2: ITEMS (goods, software, technology) ..

(a) Description of the item(s) (e.g. Name of Manufacturer / Model, Class, Type, Serial Number)	(b) Quantity/Weight
..	..
..	..
..	..

..

(c) Contract Number / Date of signature of contract .. / ..

..

SECTION3: COMMITMENT ..

(a) The item(s) indicated in SECTION2 will be used for ..

..

(b) The above-mentioned item(s) and/or replica thereof will not be used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or use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namely nuclear weapon, chemical weapon, biological weapon and WMD delivery systems such as missiles, nor be used in any nuclear explosive activity, nuclear fuel-cycle activity and/or heavy water production which is not covered by IAEA safeguards. The items will be used for civil purpose only ..

(c) The above-mentioned item(s) will be used by the end-user indicated in SECTION1 only and remain / be consumed in ..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

(d) We (I) shall not re-export the above-mentioned item(s). In the event we (I) have to re-export the item(s), we shall obtain prior consent of .. (the name of the exporter) who was obliged by METI ..

(e) (When the above-mentioned item(s) include(s) technology yes, it will be treated as strictly confidential ..

(f) Additional Commitment(s): ..

..

(g) The ownership and/or rights to use of the above-mentioned item(s) will only be transferred to a third person/company on condition that this third person/company accepts the commitments of the above declaration as binding for itself and on condition that this third person /company is known to conduct civil business activities ..

(h) We (I) we/le (was) explained and sure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Notice relating to EUC" from METI ..

Signature by the president / authorized person of the company/organization ..

..

Name of the company/organization, Name and title of signer in block letters ..

..

Date ..

..

(If you need to use continuation sheets, each must be signed by the same person who signs this form) ..

3² (비전략물자 수입시) 캐치올 허가 (Catch-all)

○ (도입배경) 전략물자 통제사양에 미달하는 품목을 조달하여 사양을 업그레이드 후, WMD,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된 용도(이하 우려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 필요

➔ 비전략물자 품목도 특정요건 하에서 통제

○ (통제요건)

- ① 우려용도로 수출될 것임을 수출자가 아는 경우(know 요건) 또는
- ②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로 허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통보한 경우(inform 요건)

➔ 일본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허가 신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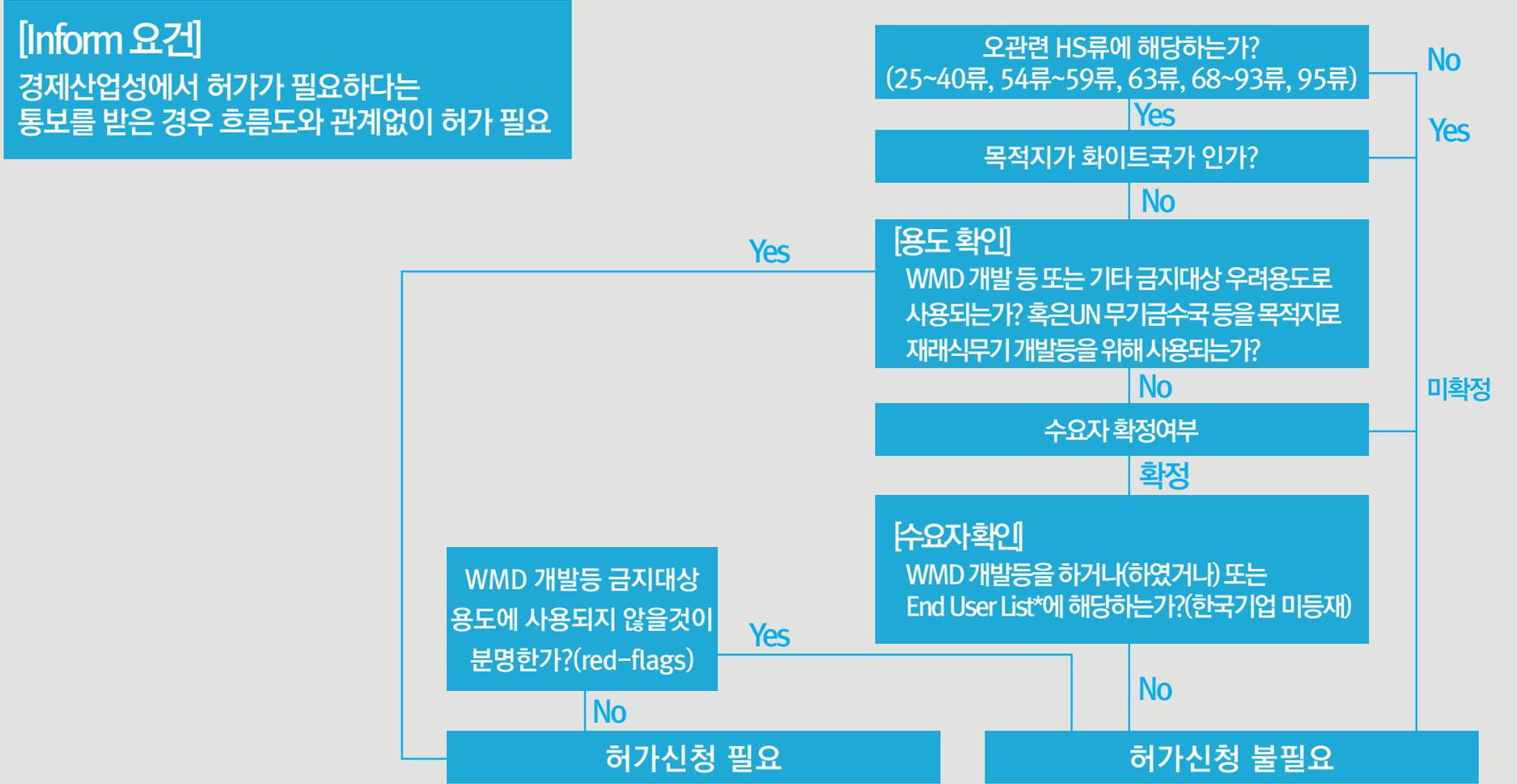
○ (적용국가) 화이트국가에는 상황허가 미적용, 일반국가는 캐치올 허가 적용대상

- ☞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수출기업은 캐치올 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
- ☞ 향후 일본 수출기업이 품목/수입자/거래/사용용도 관련 정보 요청시, 우리기업의 명확한 답변 중요 (WMD, 재래식무기 등과 무관시, 명확히 설명)

[참고 3] 캐치올 대상 품목 판단 기준

(비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도 수출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품목이 우려용도 (WMD 및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 필요 (단, 화이트국가에는 캐치올 통제 미적용)

* HS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가 대상(식료품, 목재등 제외)



① 상담창구 확충

..... (전용 홈페이지)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예정 (japan.kosti.or.kr, 2019.8.1~)

* 2019.8.1. 이전에는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고객센터 확대) 現 고객센터 2배 확충, 민원 상담 중 (02-6000-6400, 전략물자관리원 대표전화)

..... (오프라인 상담창구) 전략물자관리원 내방시 상담서비스 제공, ‘일본규제 바로알기 데스크’ 운영 중 (J-Desk, 2019.7.26.~)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 타워 16층)

② 정보제공 설명회 강화

..... (업종별 설명회) 주요 20개 업종 대상 설명회 개최(2019. 7.29~8.9)

..... (지역순회 설명회) 8개 지역상공회의소 주최(2019. 7.30~8.9)

..... (특별 교육과정) 일본 수출통제 특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정(화이트리스트 제외 확정시)

③ 기업 애로 지원

..... (수입선 다변화)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확대 보강하여, 주요 영향 품목 중심으로 1:1 컨설팅 확대, 코트라, 무역협회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발굴 지원

..... (소재부품 국산화)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준비 중,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애로상담 확대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은?

- (수출자 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통제번호) 및 캐치올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하여 확인
- (ECCN 확인) 일본의 통제리스트에 표기된 ECCN*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비교
* 미국 수출통제제도에 따른 분류번호 (기본적으로 5자리 번호)
- (판정 활용)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사양을 확보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한 후 상기 가)의 일본 통제리스트에서 확인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에 비해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갯수가 더 많은 이유는?

-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개의 통제기준을 나열하였는지,
이를 별도의 통제번호로 분리해서 기술하였는지의 분류의 차이일 뿐 통제대상 품목은 유사함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중 민감/비민감 확인 방법은?

-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japan.kosti.or.kr, 2019.8.1.~)
* 상기 자료는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 중 화이트국가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대상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에 대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확인 방법은?

-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japan.kosti.or.kr, 2019.8.1.~)
* 상기 자료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를 기반으로 일본의 통제리스트와 연계하여 참고용으로 작성

○ 非화이트국가로 변경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지?

- 일본 정부가 수출자에게 캐치올 대상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Inform)하거나,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WMD)에 전용될 것을 인지(Know)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 대상

○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 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지?

- 일본 이외 지역은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을 따르므로 가능함.
- 다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 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는 있으며,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였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D/L)에 등재되어 수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참고 4]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

〈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

화학 등 성형 제 2 조		해설		(참고) 관련 ECCN
참조 번호	항목	용어	용어의 의미	
화학 등 성형 제 2 조 제 1 항	수출 영 별표 제 1의 3 항 (1) 경제 산업 성형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화학 등 성형 제 2 조 제 1 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무기 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로서, 그 물질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30 %를 초과하는 것 : イ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CAS 3554-74-3) ロ 불화칼륨 (CAS 7789-23-3) ハ 에틸렌 클로라이드린 ニ 디메틸아민 (CAS 124-40-3) ホ 디메틸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CAS 506- ヘ 불화수소 (CAS 7664-39-3) ト 메틸 벤질레이트 (CAS 76-89-1) チ 3-퀴누클리딘 リ 피나콜론 (CAS 75-97-8) ヲ 시안화칼륨 (CAS 151-50-8) ル 산성불화칼륨 (CAS 7789-29-9) ヲ 산성불화암모늄 (CAS 1341-49-7) ワ 중불화나트륨 (CAS 1333-83-1) カ 불화나트륨 (CAS 7681-49-4) キ 시안화나트륨 (CAS 143-33-9) ク 오황화인 (CAS 1314-80-3) ケ 디이소프로필아민 (CAS 108-18-9) コ 디에틸아미노에탄올 (CAS 100-37-8) ツ 황화나트륨 (CAS 1313-82-2) ネ 트리에탄올아민 염산염 (CAS 637-39-8) ナ 트리이소프로필 포스파이트 (CAS 116-17- ヲ O,O-디에틸 포스포로티오에이트 (CAS ム O,O-디에틸 포스포로티오에이트 (CAS ウ 핵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나트륨 (CAS 16893-85-9) チ 디에틸아민 (CAS 109-89-7)	군사용 화학 작용제의 원료와 물질 또는 군사용 화학 작용제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물질은 다량의 원료이며 그 물질	화학품, 삼주, 조제 계면 활성제, 잉크, 페인트, 접착제, 준비 부동액 또는 조제 윤활제로서 개인 사용을위한 소매 용으로 포장 (병, 캔, 튜브 등으로 포장 한 것)된 물건을 제외한다.	1C350(d)



〈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

1C350.24 (AGL24)	24. 불화수소 (CAS 7664-39-3)	24. Hydrogen fluoride (CAS 7664-39-3);
1C350.25 (AGL25)	25. 메틸 벤질레이트 (CAS 76-89-1)	25. Methyl benzilate (CAS 76-89-1);
1C350.26 (AGL26)	26. 메틸포스피닐 디클로라이드 (CAS 676-83-5)	26. Methylphosphinyl dichloride (CAS 676-83-5);
1C350.27 (AGL27)	27. N,N-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올 (CAS 96-80-0)	27. N,N-Diisopropyl-(beta)-amino ethanol (CAS 96-80-0);
1C350.28 (AGL28, CB14)	28. 피나콜릴 알코올 (CAS 464-07-3)	28. Pinacolyl alcohol (CAS 464-07-3);
1C350.29 (AGL29, CB10)	29. O-에틸 O-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CAS 57856-11-8)에 관해선 군용물자 통제목록을 참조	29. SEE MILITARY GOODS CONTROLS FOR O-Ethyl O-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ite (QL) (CAS 57856-11-8);
1C350.30 (AGL30, CB9)	3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CAS 122-52-1)	30. Triethyl phosphite (CAS 122-52-1);
1C350.31 (AGL31, CB7)	31.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CAS 7784-34-1)	31. Arsenic trichloride (CAS 7784-34-1);
1C350.32 (AGL32, CB8)	32. 벤질산 (CAS 76-93-7)	32. Benzoic acid (CAS 76-93-7);
1C350.33 (AGL33)	33. 디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CAS 15715-41-0)	33. Diethyl methylphosphonite (CAS 15715-41-0);
1C350.34 (AGL34)	3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CAS 6163-75-3)	34. Dimethyl ethylphosphonate (CAS 6163-75-3);
1C350.35 (AGL35)	35. 에틸포스피닐 디플루오라이드 (CAS 430-78-4)	35. Ethylphosphinyl difluoride (CAS 430-78-4);
1C350.36 (AGL36)	36. 메틸포스피닐 디플루오라이드 (CAS 753-59-3)	36. Methylphosphinyl difluoride (CAS 753-59-3);

[참고 5] 일본의 非화이트국 대상 대량살상무기 감시대상품목(40개)

통제 대상 품목	WMD 통제 현황			
	핵무기	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1) 트리부틸 포스페이트(TBP)	●	-	-	-
(2)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	●	●	-	-
(3) 티타늄합금	●	●	-	-
(4) 마레이징강	●	●	-	-
(5) 지름 75mm 이상의 알루미늄관	●	-	-	-
(6) 유동성형기	●	●	-	-
(7) 수치 제어 기계	●	●	-	-
(8) 정수압 프레스	●	●	-	-
(9) 필라멘트 와인딩 장치	●	●	-	-
(10) 주파수 변환기	●	-	-	-
(11) 질량분석계 및 이온원	●	-	-	-
(12) 진동 시험 시스템	●	●	-	-
(13) 원심 밸런싱 런닝 머신	●	●	-	-
(14) 압력 변환기	●	●	-	-
(15) 비파괴 검사 장비	●	●	-	-
(16) 오실로스코프 또는 파형 디지털라이저 및 기록기	●	-	-	-
(17) 고전압 직류 전력공급기	●	-	-	-
(18) 대형발전기	●	-	-	-
(19) 대형진공펌프	●	-	-	-
(20) 방사능을 견디는 로봇	●	-	-	-

통제 대상 품목	WMD 통제 현황			
	핵무기	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21) TIG 용접유닛, 전자빔 용접유닛	●	●	-	-
(22) 방사능 선량계 및 감지 장비	●	-	-	-
(23) 미세분말 제조용 분쇄기	-	●	-	-
(24) 칼피셔 수분 장비	-	●	-	-
(25) 프리프레그 생산 전용 장비	-	●	-	-
(26) 인공 흑연	●	●	-	-
(27) 자이로스코프	-	●	-	-
(28) 로터리 인코더	-	●	-	-
(29) 대형트럭	-	●	-	-
(30) 크레인	-	●	-	-
(31) 밀폐식 발효조	-	-	●	-
(32) 원심분리기	-	-	●	-
(33) 동결건조기	-	-	●	-
(34) 내식성 반응기	-	●	-	●
(35) 내식성 교반기	-	●	-	●
(36) 내식성 열교환기 또는 응축기	-	●	-	●
(37) 내식성 증류탑 또는 흡수탑	-	-	-	●
(38) 내식성 충전용 기계	-	-	-	●
(39) 분무기를 탑재한 UAV	●	●	●	●
(40) UAV 탑재에 전용 설계된 분무기	●	●	●	●

[별첨 1]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도입경과

○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참여

- 3대 비확산 조약(NPT, CWC, BWC) 가입 완료(~'98)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 모두 가입 완료 (~'01)
- 최근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참여 및 발효('17)

○ 국내 제도 정비

- '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신설
- '9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근거 명확화
- '03년 캐치올 통제 도입
- '05년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개통
- '07년 캐치올 통제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

구분			가입시기(조약은 발효일 기준)	
			우리나라	일본
3대 조약	NPT	핵확산방지조약	1975	1976
	CWC	화학무기금지조약	1997	1995
	BWC	생물무기금지조약	1988	1982
4대 체제	WA	바세나르체제	1996	1995
	NSG	핵공급그룹	1995	1974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1	1987
	AG	호주그룹	1996	1985
기 타	ATT	무기거래조약	2017	2014

[별첨 2] 한-일 전략물자 제도 비교: 근거법령 및 수출지역 구분

구분	한국	일본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대외무역법(이하, 법) 제19조 ● (대통령령)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 전략물자의 정의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법적 근거로 통제 ● 형사처벌 (법 제53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이하, 외환법) 제48조 ● (정령) 「수출무역관리령」 ● (성령) 「물품등 성령」 (품목), 「무역외 성령」 (기술) ● (통달)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대하여」 등 * 기술의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외환법」 25조에 따라 「외환령」 및 이하 별도 근거로 통제 ● 형사처벌(외환법 제69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수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고시 별표 6 ● (분류) 2개 지역 구분. 신청서류나 포괄허가 허용범위 등에서 차등 취급 - 가지역 : 4대체제 모두 가입한 국가(29개국) - 나지역 : 가지역 외 모든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수출령 별표 3, 통달 ● (분류) 크게 화이트 국가(27개국)와 비화이트 국가로 구분. 신청서류나 포괄허가 허용범위 등에서 차등 취급 - 화이트 국가: 4대체제, 3대 조약, 상향허가를 모두 도입한 국가(27개국) - 비 화이트 국가: 통달을 통해 추가 10개 지역으로 세분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별도 지역으로 구분)

[별첨 2] 한-일 전략물자 제도 비교: 통제품목

		한국			일본				
근거		체제	분류	통제품목	근거	체제	분류	통제품목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3	WA	ML	군용물자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1	WA	1항	무기	
	별표2	NSG	10부	원자력		NSG	2항	원자력	
		전체	1부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AG	3항	생화학	
				1 ~ 9부		100번대 품목	MTCR	4항	미사일
				1부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WA	5항	첨단 소재
				2부		소재가공		6항	소재가공
				3부		전자		7항	전자
				4부		컴퓨터		8항	컴퓨터
				5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9항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6부		센서 및 레이저		10항	센서 및 레이저
				7부		항법 및 항공전자		11항	항법장치
		8부	해양	12항		해양			
		9부	항공우주 및 추진	13항		추진장치			
14항	기타								
15항	민감								
별표3	WA	ML	군용물자	전체		16항	캐치올		
별표2	WA	appendix	초민감품목						
별표2의3	-	-	민감품목						
			상황허가 면제대상						

*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별첨 2] 한-일 전략물자 제도 비교: 포괄허가 종류

한국			일본		
종류	해당 거래요건	가능기업	종류	해당 거래요건	가능기업
사용자 포괄	CP기업이 '가' 지역에 수출하거나, 최근 2년간 3건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등 최종사용자 미정	CP기업 (모든 등급)	일반 포괄	비민감 물품·기술을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모든 기업/ 현장심사 면제
			특별 일반 포괄	비민감 물품·기술을 일부 비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ICP기업/ 사전현장 심사필요
품목 포괄	CP기업이 플랜트 건설 등 동일목적 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장기간 공급 하는 경우로 품목 미정	AA 등급 이상 CP기업	특정 포괄	특정물품·기술을 특정 거래상대방에 반복 수출하는 경우	
			수리등 특정포괄	무기 및 관련물품을 수리, 교체등의 목적으로 화이트국가에 반송하는 경우	
			특정 자회사 포괄	특정물품·기술을 해외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별첨 2] 한-일 전략물자 제도 비교: CP기업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2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지정기준)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정부에서 엄격히 심사 및 지정 관리능력에 따라 등급제(A, AA, AAA)를 운영하여 포괄허가혜택 차등 부여 ○ (지정현황) 2019.7 기준, 157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외환법 제55조(수출자 등 준수기준) ○ (지정기준) 기업이 일본 정부에 자율관리규정 (ICP)을 신고하고, 자율준수운영현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제출 일본정부가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포괄허가신청자격 부여 ○ (지정현황) 2019. 4 기준, 1300여개사 (대외공개: 632개사)

* 한국은 CP기업, 일본은 ICP기업으로 표현

[별첨 3] 일본의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 주장 관련 팩트 체크

일본 주장	금번조치는 WTO 규범 및 자유무역 질서와 무관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불충분	한국측 사유로 양국간 국장급 협의회 미개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 (인력 부족 등)
<p>사실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조치는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미부합 - 유수의 해외 언론들도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 -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 완비 -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운영실적 보유 -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 존재, 한국만 차별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국장급 협의회를 '19.3월 이후 개최하기로 서로 양해된 사안 - 양국은 국장급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 체제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로 교류 - 2018년 5월 양국 장관 면담 등 고위급 회의시 일본측은 한국의 수출통제 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었음 - 일본 화이트국가 중 양자 협이가 없는 국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경산성에서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 - 한국은 산업부·원안위·방사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110명으로 일본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음 - 최근 미국의 과학국제안보 연구소는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 17위, 일본 36위로 평가